



제4차 부형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7. 12. (금요일), 14:00~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임돈희, 김영운, 김운미, 박성실, 박형철,
이영희, 인묵, 전경욱, 최성자, 최응천,
함한희(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 인정	공개
3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유단체 인정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 인정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비공개
5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전수교육조교 선정	공개
【검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2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3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4	‘야철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5	‘환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6	‘조선왕릉 제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7	‘산조(散調)’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공개
8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의제기 관련 소명자료 검토	비공개
9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10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11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 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12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13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관련 장단 검토	비공개
14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관련 조사자 추천 검토	비공개
1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종목(풍물놀이) 전승공동체 범위 검토	공개
16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전승 현안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검토	비공개
【보고사항】		
1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인정 관련 조사자 추천 결과	비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4-001

1.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3.5.24)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이윤란(예명 이은주)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3.6.3~)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 지정일 : 1975. 7. 12
- 전승자현황
 - 명예보유자(1명) : 이경옥('05.4.20 인정)
 - 보유자(2명) : 이윤란('75.7.12 인정),
이춘희('97.11.11 인정)
 - 전수교육조교(5명) : 김영임('01.11.30 선정), 김금숙('90.10.10 선정)
김장순('97.11.11 선정), 김혜란('92.7.1 선정)
이연화('96.5.1 선정)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이윤란[예명 이은주]('22년생, 여 / '75.7.12 인정)
- 일시/장소 : 2013. 5. 10(금) /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내용 : 공개행사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해당 보유 기·예능의 실연 및 전수교육의 정상적 실시 여부 등 조사
- 조사방법 : 공개행사에 대한 현지조사 및 대상자 면담 등

(3) 조사결과

조사자	검토의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대가 노화하여 결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화나 노래를 할 때에도 거친 소리가 나오며, 상청으로 올라가지 못해 음고가 계속 떨어짐. ○ 최근 3년간 공개행사는 본인의 전문 분야인 잡가를 거의 공연하지 않거나 독창으로 공연하지 못한 상황임. 이번 공연에서는 잡가를 제창하였으나 제자들의 소리에 얽혀져서 간혹 끊어지고 이어지고를 반복함. ○ 92세라는 나이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고 잘 연주하였으나 명예보유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세를 넘긴 나이에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음악적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음. 그러나 고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로, 명예보유자로서 후진들을 격려하고 편달해 주기를 바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인하여 경기민요 주요 곡목인 잡가를 공개행사의 공연에서 온전하게 기량을 발휘하여 가창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 전수교육에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나,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주요내용

- 2010년 : 미실시(공개행사 모니터링 보고서 없음)
- 2011년 : 이윤란 보유자의 90세를 기념하는 공연으로 마련되어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보기 어려움. 공연에서 이윤란 보유자는 경기 긴잡가에는 참여하지 않고, 회심곡, 긴아리랑, 북청 애원성 등을 불렀음
- 2012년 : 보유자가 고령이라 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평양가, 긴아리랑, 산타령 등에만 제창의 일부로 참여함

(5) 예고사항(관보 제18029호/2013.6.3 / 문화재청 공고 제2013-185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7호 경기민요	이운란	여	1922.10.6.	경기민요	(110-380) 서울 종로구 을 곡로10길 75 (권농동)

- 예고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이운란은 해당 종
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
유로 인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6) 예고결과 : 이의 제기 있음

라. 의결사항

- 이운란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 인정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3.5.24.)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전수교육조교 차부회, 박일홍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상 공고(2013.6.3~)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 지정일 : 1986. 11. 1.
-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1명) : 김춘신('12.7.23. 인정)
 - 전수교육조교(3명) : 차부회(노승, '91.5.1. 선정)
박일홍(목중·최팔이, '02.2.5. 선정)
조용휘(목중·양반·사자 '02.2.5.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보유자 인정조사 실시('13.4.28)
 - 조사대상자 : 전수교육조교 3명(차부회, 박일홍, 조용휘)
 - 조사위원 : 관계전문가 5명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제3차 회의('13.5.24.)
 - 박일홍, 차부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3) 예고사항(관보 제18029호/2013.6.3./문화재청 공고 제2013-185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 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 인정	박일흥 (朴日興)	남	1957.12.12.	목중·최팔이	(404-220) 인천 서구 가정로 190번길 10-6 (석남동)
		차부회 (車富會)	남	1959.6.29.	목중·노승	(400-150)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27번길 7-10(내동)

○ 인정예고 사유 : 박일흥, 차부회는 은율탈춤의 전승기량이 뛰어나고 전승능력이 우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4)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함.
 - 차부회, 박일흥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유단체 인정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고 동 보유단체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하기 위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3.5.24)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택견보존회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고(2013.6.3.~) 보유단체 인정 및 비영리법인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개인종목)
- 지정일 : 1983. 6. 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1명) : 정경화('95. 6.1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박만엽('96.2. 1 선정)
박효순('08.2. 28 선정)

(2) 택견의 보유단체 신청 경과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단체종목 변경 승인요청('13.2.19)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존회 법인허가 신청('13.2'25)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존회 법인 검토('13.4월)
 - 보유자, 조교, 이수자 중심의 택견보존회 결성
 - * 보유자 1, 조교 2, 이수자 41명(이수자 16명 미가입)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단체종목 전환 필요성 관계전문가 검토('13.5월)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13.5.24) 검토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단체종목으로 전환토록 함
 - 택견보존회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함. 아울러, 이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3) 예고사항(관보 제 18029호/2013.6.3./문화재청 공고 제2013-185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단체명	주소
제76호 택견	보유단체 인정	사단법인 택견보존회	충북 충주시 증원대로 3324 택견전수관

- 인정예고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단체종목으로 전환하도록 함. 택견보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고, 이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4) 예고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의결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단체 종목으로 전환토록 함.
- 택견보존회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고, 이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보유단체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3-04-004

4.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단체의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

5.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전수교육조교 선정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전수교육조교 선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
교육조교 선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 지 정 일 : 1969. 2. 11.
-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1명) : 김종곤(’08.1.24.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신수식(줄제작, ’95.8.1.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 전승자 총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현지조사 실시(’13.5.29-31.)

(3) 조사개요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 : 김종한(남, ’55년생), 하영준(남, ’52년생), 이칠봉(남, ’58년생),
장덕주(남, ’58년생), 이승재(남, ’59년생)
- 조사일시 : 2013.5.29~31
 - 5.29(수) 가닥줄 제작
 - 5.30(목) 몸줄 제작
 - 5.31(금) 영기제작 및 줄다리기 행사

- 조사장소 : 경남 창녕 영산놀이마당(줄제작)
경남 창녕 창녕제일고등학교(줄다리기 행사)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단체)의 지표항목
- 조사방법 : 실연에 대한 기량평가 및 이론·전승 관련 면담
- 조사제외 항목
 - 지표제외 항목 : 1-1-2.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종목의 특성상 전승자 다수에 의해 전승되는 전승공동체 종목임. 따라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4-006

1.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이봉주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12.12.12 신청)가 접수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 지정일 : 1983. 6. 1.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김수영(주물/ '08. 8. 5 인정)
이봉주(방자/ '83. 6. 1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이형근('90.10.10 선정)

(2) 확인조사 개요

- 기 간 : 2012. 11. 28.(수)
- 장 소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소재 보유자 공방
- 확인자 : 여성희 사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이봉주(남, '26년생/ '83. 6. 1 보유자 인정)

(3) 확인결과

- 이봉주 기능보유자는 거동이 가능하나 고령으로 인하여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후진 양성을 원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우리 청 검토의견

-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자의 연령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의결사항

- 이봉주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2.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에 따라 고령 보유자에 대한 명예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 지정일 : 1986. 11. 1.
- 전승자현황
 - 보유자(2명) : 강준섭(결사(乞士)/ '85.2.1 인정),
김귀봉(사당(邪黨)/ '97.8.16 인정)
 - 전수교육조교(6명) : 강민수(거사/ '11.12.21 선정),
김치선(중/ '11.12.21 선정),
박광순(가상제(假喪制)/ '96.5.1 선정),
김애선(사당(邪黨)/ '96.7.1 선정),
강정태(악사/ '01.10.18 선정),
박연준(남상제/ '01.10.18 선정)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자 : 강준섭(결사(乞士)/ '85.2.1 인정),
김귀봉(사당(邪黨)/ '97.8.16 인정)
- 일시/장소 : 2013. 5. 23(목) / 전남 진도군 운림산방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내용 : 공개행사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해당 보유 기·예능의 실연 및 전수교육의 정상적 실시 여부 등 조사
- 조사방법 : 공개행사에 대한 현지조사 및 대상자 면담 등

(3)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조사자	검토의견
강준섭	A	○ 현재 월 1~2회 전수교육 실시 ○ 건강은 좋지 않지만 실연 가능 ○ 보유자로서의 능력 유지
	B	○ 공연에 참가하여 역할 수행 ○ 전수교육 월 2회 수행 ○ 건강 양호
	C	○ 공연에는 참가하지만 기운이 부족하고 대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음 ○ 전수교육을 실시하지만 부인과 아들이 대신하는 듯함
김귀봉	A	○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B	○ 노령과 병환으로 불참. 명예보유자 인정 필요
	C	○ 광주보훈병원에 입원 중으로 공연에 불참

(4)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공개행사 모니터링 주요내용

대상자	주요내용
강준섭	<p><2010년>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출연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진행을 주도하고, 거사역을 맡은 아들 강민수를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p> <p><2011년> 보유자 2인은 연로한 관계로 실연에 참여는 하지 않았으며 전체 진행을 지시 감독</p> <p><2012년> 보유자 강준섭과 김귀봉은 노환과 병환으로 인해 공개행사에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다. 강준섭은 공연 내내 무대 앞 객석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다가 공연순서를 지시하거나 추임새를 넣어주는 등 출연진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였다.</p>

대상자	주요내용
김귀봉	<p><2010년> 병고로 인해서 다시래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을 하였다.</p> <p><2011년> 보유자 2인은 연로한 관계로 실연에 참여는 하지 않았으며 전체 진행을 지시 감독</p> <p><2012년> 보유자 강준섭과 김귀봉은 노환과 병환으로 인해 공개행사에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다. 김귀봉은 무대 앞에 앉아서 공연을 지켜보았다.</p>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김귀봉을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채화칠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3. 5.24)에서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의결함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2013. 6.26)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자 : 박경옥(개인 신청), 최종관(서울 신청), 양유전(강원 신청)
이의식(전북 신청)
- 신청종목 : 채화칠장
- ※ 채화칠장 : 옷칠한 기물에 안료를 섞어 다양한 색과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

(2) 추진경과

- 2008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제3차 회의('08.7.25) 심의 “지정가치 인정, 조사대상자 전국 공고 발굴 필요”
- 관련 전승자 추천 및 신청('08.8.19 / 시·도 추천 3명, 개인 신청 2명)
- 신청서류 심사('08.10.31 / 신청자 모두를 기량평가 대상으로 함)
- 현지조사 실시('09.6.24~7.5)
- 공예 관련단체 건의서 제출('09.10.19)
“현지조사자 4인중 3인이 ○○○협회 전 회장이며, 조사대상자 1인이 동 협회 교육위원이므로 심사 부당”
- 칠공예 관련단체 확인('09.11.11)
- 조사위원 재구성 관련 조사위원 추천 의뢰('10.2.1 / 한국미술사학회)

- 2011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에서 조사위원 추천 심의(‘11.12.9)
- 2012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에서 조사방향 검토(‘12.11.9)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규정」의 조사항목에 의하여 현지조사 재 실시
- 신청자 공방 현지조사(‘12.12.17~18)
- 기량심사(‘13.1.14~19 / 6일간)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 지정 예고 검토(‘13.3.8)
 - 양유전, 이의식, 최종관의 완성 작품을 확인한 후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 검토
- 미완성 공예품 추가 제작(‘13. 4.22~5.1)
-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지정 예고 검토(‘13.5.24)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
- 2013년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소위원회 회의 지정 예고 검토(‘13.6.26)

(3) 현지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4인
- 조사대상자 : 신청 철회한 OOO를 제외한 신청자 4인
- 공방조사 : 2012.12.17~18 / 서울, 원주, 전주 등 신청자 공방
- 기량심사 : 2013. 1.14~19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팔각구절판의 채화칠 공예품을 일정 기간에 제작하도록 과제 부여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 조사제외 항목 : 전승기량 실기능력 항목 중 ‘견실도’

(4) 미완성 공예품 추가 제작

- 기간/장소 : 2013. 4.22.~5.1.(10일간) / 전통문화교육원
- 참석자 : 양유전, 이의식 * 최종관은 첫날 민원제기 후 불참
- 민원내용 (2013. 4.19, 4.23 / 최종관)
 - 기량심사시(‘13.1.14~19) 같은 시간, 같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미흡하나 추가 완성 없이 그 당시 마감된 상태로 평가해 주었으면 함.
 - 조사대상자 OOO은 조사자 OOO교수의 전시회 개최시 2차례 작품 개발에 도움을 준 적이 있으며, 조사자 3명이 목공예 전공의 동문 사제 지간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조사절차에 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조사자 사전회의, 조사대상자 동의 등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는 공동 권리자, 친족관계, 대리인, 용역수행 등 제척사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5) 소위원회 검토

- 일시/장소 : 2013. 6. 26. 14:00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구성 : ○○○위원을 포함하여 칠공예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검토결과
 - 점수 편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기량이 가장 우수한 이의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할 것을 권고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사단 구성 및 조사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조사는 5인 이상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 및 완성 공예품을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채화칠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이의식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4. '야철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야철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에서 '야철장·환도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2013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 관계전문가 사전회의에서 '야철장'과 '환도장'을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야철장 * 전통사찰 제련기능
- 신청자 : 한정욱(서울시 신청)

(2) 추진경위

- 서울시 야철장·환도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 제출('12. 1. 2)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13. 1.17)
- 종목 지정조사 사전회의('13. 4.19)
-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검토 서면조사('13. 4.20~5.20)

(3) 서면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인
- 조사기간 : 2013. 4.20~5.20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조사지표(개인) 항목의 전승가치 조사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야철장'의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환도장 기능에 다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목 지정 필요성 없음.
단, 환도장 현지조사 시 야철 기능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5. '환도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환도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에서 '야철장·환도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2013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 관계전문가 사전회의에서 '야철장'과 '환도장'을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환도장
* 강철을 가열해 단조접쇠과정을 거쳐 전통도검 도신 제작
- 신청자 : 한정욱(서울시 신청)

(2) 추진경위

- 서울시 야철장·환도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 제출('12. 1. 2)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13. 1.17)
- 종목 지정조사 사전회의('13. 4.19)
-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검토 서면조사('13. 4.20~5.20)

(3) 서면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인
- 조사기간 : 2013. 4.20~5.20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조사지표(개인) 항목의 전승가치 조사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도장’의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환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야철 기능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
 - 공모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6. '조선왕릉 제향'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조선왕릉 제향'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으로부터 '조선왕릉 제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어, 2013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개요

- 신청종목 : 조선왕릉 제향
- 신청단체 :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사장 : 이태섭)

(2) 추진경과

-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종목지정 신청(2012.12.)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 계획에 포함(2013.1.11.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회의)
-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종목지정 신청자료 보완제출(2013.5.)
- 지정가치 서면조사 실시(2013.6.20. ~7.4.)

(3) 지정가치 서면조사

- 조사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기간 : 2013.6.20. ~ 7.4.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조사지표(단체) 항목의 전승가치 조사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왕릉 제향’의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조선왕릉 제향’의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7. ‘산조(散調)’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산조(散調)’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총원 조사계획에 따라 ‘산조(散調)’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가치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289호)」에 의거, 2013년도 신규 종목 지정 검토 대상인 산조(散調/아쟁, 피리, 통소, 태평소, 단소, 소금, 해금)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검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실시

(2) 학술연구용역 개요

- 사업수행자 : (사)한국국악학회
- 참여연구단

성명	소속	연구 종목	비고
이상규	전주교육대학교	피리, 태평소	책임연구원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소, 단소, 소금	
박소현	영남대학교	아쟁, 해금	

- 사업기간 : 2013.3.14.~6.10.
- 소요예산 : 18,500천원(연구개발비)
- 연구주요내용
 - 산조(아쟁, 피리, 통소, 태평소, 단소, 소금, 해금)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등 조사
 - 해당 산조를 전승하고 있는 전승자 현황 파악

- 전승자 인적사항
-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 현황
- 해당 산조별 관련 자료(음반, 논문, 단행본 등) 조사

(3) 학술연구용역 결과

- 아쟁산조, 피리산조, 통소산조, 태평소산조, 단소산조, 소금산조, 해금산조 등 7종의 산조는 19세기 후반 발생한 산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중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성립된 아쟁산조, 피리산조, 통소산조, 단소산조, 해금산조 등 5종의 산조는 이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대금산조와 비교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태평소산조와 소금산조는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됨.
- 아쟁산조, 피리산조, 통소산조, 단소산조, 해금산조 등의 산조는 남도의 음악적 특징 외에 경기도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음악문화현상을 파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아쟁산조, 피리산조, 해금산조는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한 상당히 축적된 학술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통소산조와 단소산조는 일부 제한된 연구자에 의한 학술활동으로 학술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태평소산조와 소금산조는 학술적 가치를 논하기도 힘든 상황임
- 아쟁산조, 피리산조, 해금산조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종목으로서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와 함께 전승현황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후속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통소산조와 단소산조 종목 역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의 지정 추진을 제언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조(散調/아쟁, 피리, 통소, 태평소, 단소, 소금, 해금)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해금, 아쟁, 피리 산조는 역사성이 미흡하며, 이미 전승이 활성화되어 있어 지정이 시급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마.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3-04-013

8. '수록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소명자료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9.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 지정일 : 1969. 2. 11.
-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1명) : 김형권('05.4.20. 인정)
 - 전수교육조교(2명) : 정천국(목우전(木牛戰), '90.10.10. 선정), 조대권(쇠머리제작, '95.8.1.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현지조사 실시('13.5.21-22.)

(3) 조사개요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 : 전수교육조교 2명
- 조사일시 : 2013.5.21~22
 - 5.21(화) 쇠머리 제작
 - 5.22(수) 영기 제작 및 쇠머리대기 행사

- 조사장소 : 경남 창녕 영산놀이마당(쇠머리제작)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쇠머리대기 행사)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단체)의 지표항목
- 조사방법 : 실연에 대한 기량평가 및 이론·전승 관련 면담
- 조사제외 항목
 - 지표제외 항목 : 1-1-2.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3-1.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 기여도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종목의 특성상 전승자 다수에 의해 전승되는 전승공동체 종목임.
 따라서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10.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 지정일 : 1969. 2. 11.
- 전승자 현황
 - 명예보유자(1명) : 김종곤('08.1.24.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신수식(줄제작, '95.8.1. 선정)

(2) 추진경과

- 2013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포함('13.1월)
- 현지조사 실시('13.5.29-31.)

(3) 조사개요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 : 전수교육조교 1명
- 조사일시 : 2013.5.29~31
 - 5.29(수) 가닥줄 제작
 - 5.30(목) 몸줄 제작
 - 5.31(금) 영기제작 및 줄다리기 행사

- 조사장소 : 경남 창녕 영산놀이마당(줄제작)
 경남 창녕 창녕제일고등학교(줄다리기 행사)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단체)의 지표항목
- 조사방법 : 실연에 대한 기량평가 및 이론·전승 관련 면담
- 조사제외 항목
 - 지표제외 항목 : 1-1-2.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3-1. 보유단체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종목의 특성상 전승자 다수에 의해 전승되는 전승공동체 종목임.
 따라서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11.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 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3년도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개인) 인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
- 지정일 : 1988. 8. 1.
- 전승자현황
 - 이수자(1명) : 김재중('95. 6. 30 이수)

(2) 추진경과

-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 바디장 전승자 추천 및 신청 접수('12.10.19, 신청 1명)
-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13. 1.17)
-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3. 4.16)
- 현지조사 실시('13. 4.16~4.17)

(3) 현지조사 개요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 : 김재중(이수자)
- 일시/장소 : 2013. 4.16~17 / 대전 소재 조사대상자 자택
- 조사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개인)의 지표항목 조사
 - 조사제외 항목 : 전승기량의 실기능력 조사항목 중 ‘완성품의 미적·예술적 가치’ 항목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전승기량 및 전승활동이 미흡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3-04-017

12.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인정 예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2013-04-018

13.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관련 장단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2013-04-019

14.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관련 조사자 추천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종목(풍물놀이) 전승공동체 범위 검토

가. 제안사항

201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인 '풍물놀이'의 전승공동체 범위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2013.3.8)에서 201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으로 '풍물놀이'가 선정됨에 따라, 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국내 전승공동체 범위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1년 무형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1.1.14)
 - 2012년도 유네스코 심사 대상 종목으로 풍물놀이(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가야금산조(병창 포함), 대금·피리정악(대취타 포함), 갯일(망건장, 탕건장 포함)선정
- 2011년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2011.9.2)
 - 2012년도 심사대상 종목의 명칭을 일부 조정
 - 정선아리랑→아리랑, 가야금산조→가야금산조 및 병창
 - 심사대상 종목 및 추천 순위 결정
 - ①아리랑 ②풍물놀이 ③가야금산조 및 병창 ④대금·피리 정악 ⑤갯일
- 2011년 무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11.10.14)
 - 2013년도 심사 대상 종목은 다음과 같이 함
 -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 종목을 확대토록 함
 - 김치, 연등회, 탈놀이
 - * 기 신청종목인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대상을 확대하여 탈놀리로 함

- 2013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 우선순위 제출(무형문화재과→국제교류과)
(2012.8.17)
 - 김치와 김장문화
- 2013년 무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2013.3.8)
 - 201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심사종목은 ‘풍물놀이’로 함.

(2) 농악 관련 무형문화재 현황

- 중요무형문화재(6건)

지정번호	종목명	보존회	지정일자
11-1	진주삼천포농악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1966.6.29
11-2	평택농악	평택농악보존회	1985.12.1
11-3	이리농악	이리농악보존회	1985.12.1
11-4	강릉농악	강릉농악보존회	1985.12.1
11-5	임실필봉농악	임실필봉농악보존회	1988.8.1
11-6	구례잔수농악	구례잔수농악보존회	2010.10.21

- 시도무형문화재(24건)

시도	종목명	보존회	지정일자
부산	부산농악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1980.2.12
대구	고산농악	고산농악보존회	1984.7.25
	옥수농악	옥수농악보존회	1988.5.30
인천	갑비고차농악	갑비고차농악보존회	2008.12.15
광주	광산농악	광산농악보존회	1992.3.16
대전	웃다리농악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1989.3.18
경기	광명농악	광명농악보존회	1997.9.30
	양주농악	양주농악보존회	2006.3.20
강원	평창둔전평농악	평창둔전평농사놀이보존회	2003.4.25
	원주매지농악	원주매지농악보존회	2006.1.6
충북	청주농악	청주농악보존회	1992.10.23

시도	종목명	보존회	지정일자
전북	부안농악	부안농악보존회	1987.12.31
	정읍농악	정읍농악보존회	1996.3.29
	김제농악	김제농악보존회	1996.3.29
	남원농악	남원농악보존회	1998.1.9
	고창농악	고창농악보존회	2000.7.7
전남	화순한천농악	한천농악보존회	1979.8.3
	우도농악	우도농악보존회	1987.8.25
	고흥월포농악	월포농악보존회	1994.12.5
	곡성죽동농악	죽동농악보존회	2002.4.19
	진도소포걸궁농악	소포걸궁농악보존회	2006.12.27
경북	청도차산농악	청도차산농악보존회	1980.12.30
	금릉빛내농악	금릉빛내농악보존회	1984.12.29
경남	함안화천농악	함안화천농악보존회	1991.12.23

라. 검토의견

- 현재 풍물놀이 관련 전승공동체로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마을, 개인, 동호회 등 다종다양한 풍물놀이 전승공동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국내 전승공동체 범위는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 풍물놀이의 전승공동체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 농악 관련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포함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명칭에 맞추어 ‘농악’의 지정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변경을 검토토록 함.
 - 소위원회 구성은 김영운, 이영희, 전경욱을 포함하며 그 밖에 관계전문가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안건번호 무형2013-04-021

16.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전승 현안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검토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3-04-022

1.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인정 관련 조사자 추천 결과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 2(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